

제 3호·1996·7·29.

## 책임감리제도의 문제점과 발전적 개선방안

김 관 보  
(CERIK 부연구위원)

### < 요약 >

- 시행한지 2년이 경과된 현행 책임감리제도는 민간 감리에 대한 이해의 부족, 감리기술자 개인의 기술능력 취약 및 정부/감리회사의 기술향상 지원책 결여, 설계와 시공의 분리 운영, 계약자로서의 구속력이 약한 「감리업무수행지침서」 사용 등 감리업무의 근본적인 제약요인을 갖고 출발하여 운영상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다.
- 20개 책임감리현장을 방문하여 면담한 결과 조사된 주요 문제점은 첫째, 「건설기술관리법」 및 「감리업무수행지침서」에 규정된 감리업무의 역할분담이 명확치 않아 발주처의 업무담당관, 감리자, 시공자간에 갈등을 야기하고 있어 감리업무의 수행이 비효율적이다. 둘째, 감리대상의 획일화로 감리원 수급과정에서 시공사의 중견기술인력 전출 및 감리원의 질적수준 저하 등 양질적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셋째, 시공감리하의 발주처 감독관행이 그대로 공사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끝으로 감리원들의 하루일과의 상당한 시간을 발주처 보고 및 감사 대비를 위한 행정업무에 할애하고 있다
- 현행제도 운영의 개선방안으로 첫째, 감리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감리업무 영역의 구체화, 명확한 감리원의 권한과 책임을 규정할 「감리용역표준계약서」의 상용화 유도, 감리인력의 기술능력 제고 방안 등이 강구되어야 한다. 특히 기술능력 제고 수단으로 감리회사의 전문화대형화, 기술자 양성 및 교육 제도개선, 외국감리업체와의 공동도급 또는 경쟁유도가 필요하다. 둘째, 발주처가 감리용역방법을 공사의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우수한 감리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감리방법 및 대상을 다양화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책임감리 대상을 100억이상 P.Q공종으로 조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건설사업관리제도(CM)와 책임감리의 연계운영, 감리단 구성의 2원화(검측원제도 도입), 감리원 투입의 신축적 운영방안 등을 강구해야 한다. 셋째, 감리행정업무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보고업무의 단순화내실화 및 감사 주체들간의 “감사 마스터 플랜” 수립).
- 장기적으로 건설시장개방에 대비한 바람직한 감리들은 「책임감리」를 포함하는 「공사감리」(책임감리, 시공감리, CM등)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현행 책임감리제도를 점진적인 정착을 위한 미시적인 시각보다 건설용역시장개방, CM제도 도입, 건설산업 기본법 제정 등 건설산업환경변화에 대비한 거시적인 시각에서 발전적으로 재검토해 나가야 할 것이다.